

## 경운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지도 및 과외활동 지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운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조직)**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.10.01.>

1.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, 지도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.
2.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,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3. <삭제>
4. 위원은 경운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3조(임기)**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회의)** 위원회의 회의 및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5조(기능)**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상·벌에 관한 사항
2. 학생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
4. 예·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
5. 학생회 활동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
6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5조의2(감사)** ① 학생지도위원회가 대의원회에 총학생회 감사를 요구 할 경우 대의원회는 4주 이내 감사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, 감사보고가 미흡할 경우 지도위원회가 총학생회를 직접 감사 할 수 있다.

② 대의원회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미흡하게 한 경우 대의원의장에게 경고하며, 이를 거듭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지도위원회가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.

③ 총학생회는 대의원회가 감사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이를 불응시에는 대의원회의 불신임의 사유가 될 수 있다.

**제6조(특례)** 총장은 학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생을 포상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.

**제7조(보칙)**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**제8조(위원회 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는 교학처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